

서울중앙지방법원

제 17 민 사 부 (합 의)

결

정

사 건 2012가합17061 증권관련집단소송

대표당사자 김순덕 외 5인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

피 고 도이치뱅크 아게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진영, 이윤식, 이상윤, 박성하, 박철희, 박상용,
배태준

주 문

1. 이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한누리[220-81-95982,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27, 431호(서초동, 지파이브센트럴프라자)]를 분배관리인으로 선임한다.
2. 분배관리인은 2017. 10. 20.까지 분배계획안을 제출하라.

이 유

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,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1조 제1항, 증권관련 집단소송규칙 제31조 제1항,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7. 9. 12.

재판장 판사 부 상 준

 판사 손 혜 정

 판사 강 명 중